

재태국 한인회 정관 (개정안)

제 1장 총칙 (總則)

제 1조 명칭 (名稱)

1. 본회는 재태국 한인회라 칭한다. (이하 한인회라 한다)
2. 본회의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ailand 로 하며, 영문약칭은 'KAOT'라 한다.

제 2조 목적 (目的)

1. 한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태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2. 한인회 일원의 각 한인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조장한다.
3. 한인회는 태국 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태국인들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모국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제 3조 관할구역 및 사무국 위치 (管活區域 및 事務局 位置)

1. 한인회는 태국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모든 한인동포와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2. 한인회의 본부 사무국은 태국 수도 방콕시에 두며, 태국 내 지방도시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동포와 각종 사업체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지역 한인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특별 준수사항 (特別 遵守事項)

1. 한인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태국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재태국 한인회 정관 (2010년 9월 2일 일부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1. 본회의 명칭은 '재 태국 한인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ailand'로 표기한다.

제 2조 목 적

1. 본회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본회는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한다.
3. 본회는 한인들의 교육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4. 본회는 대한민국과 태국 상호간 상호이해 및 협력 등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조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비영리성과 특별 준수 사항

1. 본회는 재정 확립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본회에 수입된 재원은 본회의 목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본회는 한국과 태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4조 활동구역 및 소재지

1. 본회는 태국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동포와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2. 본회의 본부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두고, 태국 내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다.

2. 한인회는 제 2조에 명시된 목적사업 성공을 위해 자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한인회에 귀속된 모든 자원은 한인회 회칙 제 2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제 2 장 회 원 (會 員)

제 5조 회원의 구분 (會員의 區分)

한인회 회원은 정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正會員) (개인회원 및 가족회원)

정회원은 본 정관 3조에 명시한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8세 이상의 한인 동포로 태국정부가 발행한 체류비자를 소지한 자로 한다.

2. 법인회원 (法人會員)

법인회원은 본 정관 3조에 명시한 관할구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법인 또는 법인대표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權利와 義務)

1. 모든 회원은 한인회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해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한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한인회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한인회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기구 및 총회 (機構 및 總會)

한인회는 최고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회 및 지역한인회(지회)를 기구로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가. 개인회원 - 태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8세 이상의 한인 또는 한인동포로서 1년 동안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자.

나. 법인회원 - 한국 법인의 태국에 주재하는 지사 및 현지 법인

2. 준회원 - 상기 1항에 기준한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상기 1,2항의 자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본회에 기여한 자로서 인정되어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4.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5. 회원은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7조 최고위원회의 정의 및 목적 (最高委員會의 定義 및 目的)

1. 최고위원회는 한인사회 내 명망 있는 원로들로 구성된 한인회의 상임기관으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8조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最高委員會의 構成 및 役割)

1. 최고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한다.

- 1)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한 자
- 2) 만 60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2. 최고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최고위원회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장과 총무를 지명 선출한다.

4. 최고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최고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5. 최고위원회는 한인회 이사회로부터 매년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사업계획 또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여 조언하며 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6. 최고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한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최고위원회는 회장 유고시, 회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7. 최고위원회는 교민사회의 원로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교민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9조 자문위원회의 정의 및 목적 (諮問委員會의 定義 및 目的)

1. 자문위원회는 한인회 회장에게 한인회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와 조언을 통해 한인회가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諮問委員會의 構成 및 役割)

1. 자문위원은 아래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 1) 전임 한인회장
- 2) 전임 지역한인회장
- 3) 전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국지회장
- 4) 전임 민주평통 자문회의 태국지회장
- 5) 전임 사단법인 재향군인회 태국지회장
- 6) 전임 한태상공회의소 회장
- 7) 전임 한태관광진흥협의회 회장
- 8) 전임 OKTA 방콕지회장
- 9) 전임 팔각회 태국지회장
- 10) 전임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사장
- 11) 전임 한인상가번영회 회장
- 12) 전임 여성회장
- 13) 기독교 대표
- 14) 불교 대표
- 15) 천주교 대표

2. 자문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자문위원회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장과 간사를 지명 선출한다.

4.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자문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는 차기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 확인과 후보 실질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선관위에 이첩한다.

6. 자문위원회는 한인회 회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언을 한다.
7. 자문위원회는 한인회 및 그 산하단체에 접수, 이관 요청된 진정, 탄원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처리방안을 강구한다.
8.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한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이사회의 구성 (理事會의 構成)

1. 이사회는 4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면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한인회 회장이 맡아 수행한다.
4.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임명되는 이사의 임기는 결원된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조 이사회의 역할 (理事會의 役割)

1.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개정안 최고위원회 상정
2. 한인회에 귀속된 주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
3. 산하단체의 구성 및 해산
4. 한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과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본회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의 탄핵 및 해임
8. 최고위원회에 재정 및 업무보고 (연 2회, 상·하반기)

제 3장 이 사 회

제 12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3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면한다.
2. 이사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한인회 회장이 겸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 임명되는 이사의 임기는 결원된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한인회의 운영기관으로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안의 심의
2.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주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
3. 산하단체의 구성 및 해산
4. 본회 회장의 보궐선거
5. 특별위원회 구성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출석위임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1/3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 회의 주요내용 등을 1주일 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임원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성원을 위하여 소정 양식의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것을 출석위임이라 하고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의결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 13조 이사회의 소집 (理事會의 召集)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1/3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 및 주요내용 등을 1주일 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임원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성원을 위하여 소정 양식의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의결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 14조 지역한인회 (地域韓人會)

1. 한인회는 태국 내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지회(지역한인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회장의 선출은 지회에서 선출한다.
3. 지회의 회장은 한인회 회장을 도와 각 지역별로 활발한 한인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장 총회 (總會)

총회는 한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5조 정기총회 (定期 總會)

1. 한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4/4분기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3.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조 임시총회 (臨時總會)

제 4장 총 회

제 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개최한다.
 - 가.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에 의한 발의
 - 나. 이사회의 결의

제 9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토의안건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총회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총회의 결의 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3호 사항은 총회에서만 결의할 수 있다.

1. 회장 선임
2. 정관의 변경
3. 한인회의 해산
4. 감사 선임
5. 사업 및 결산보고
6. 회장이 상정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

제 11조 결의방법

1.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항에 의해 개최하며, 개최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최고위원회의 의결
2. 자문위원회의 의결
3. 이사회회의 의결
4. 회장의 직권
5.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제 17조 총회의 의장 (總會의 議長)

1. 한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한인회 회장이 총회 당일에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한인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부재중일 경우는 총괄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한인회의 각 기구는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5. 한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한인회 각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總會의 議決事項)

1. 사업 및 결산보고
2. 정관의 변경이나 개정
3. 한인회가 소유한 자산의 변동사항(단, 최고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한인회장이 상정한 사항.
5. 100명 이상의 정회원 서명으로 회장에게 요청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
6. 기타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 5장 임직원 (任職員)

제 19조 임직원의 구성 (任職員의 構成)

한인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5인 이내
3. 수석부회장 1인
4. 총괄부회장 1인
5. 분과별 부회장 10인 이내
6. 분과별 이사 30인 이내
7. 감사 2인 (업무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8. 사무국

제 20조 회장 (會長)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행사를 주관, 총괄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3.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4.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회장유고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한인회 최고위원회에서 추천된 회장후보를 이사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회장을 선출하며 잔여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승계한다.

제 21조 부회장 (副會長)

1. 부회장은 상임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으로 나뉘며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분과별 업무를 관장한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장 임 직 원

제 16조 임직원의 구성

한인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9 인 이내
3. 이사 20 인 이내(이사의 구성과 직무 등은 제12조~15조에 따른다.)
4. 감사 2 인 이내
5. 고문 및 자문위원
6. 사무국 직원

제 17조 회장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 모든 업무와 행사를 주관, 총괄한다.
2. 회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4.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5.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분과별 업무를 관장한다.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단,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통하여 다시 회장을 선출한다.

제 19조 감사

1. 감사는 2인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장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 2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은 전직 한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할 수 있다.

2. 상임부회장

아래에 명시한 한인단체의 단체장은 한인사회 내 각 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한인회를 구심점으로 상호협력하고 화합하는 하나된 한인사회 구현을 위해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된다.

회장은 범재태한인적 사안에 대해 상임부회장과 협의하고 상호 협력한다.

- 1) 민주평통 자문회의 태국지회장
- 2) 한태상공회의소 회장
- 3) 재향군인회 태국지회장
- 4) 한태관광진흥협회 회장
- 5) OKTA 방콕지회장
- 6) 팔각회 태국지회장
- 7)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사장
- 8) 한인상가 번영회 회장

3. 임명직 부회장

회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부회장 외에 복수의 임명직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명직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및 총괄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유고시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총괄부회장은 모든 임원을 직접 통솔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22조 감사 (監事)

1. 감사는 2인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장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4. 감사는 한인회의 업무진행 사항, 재무상태, 각종 서류와 장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감사하고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복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규정에 따른 급료를 지급 받고 회장 및 임원들의 활동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 수 있다.

제 23조 사무국 (事務局)

1.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복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규정에 따른 급료를 지급 받고 회장 및 임원들의 활동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 수 있다.

제 6장 선거 (選舉)

제 24조 정의 (定意)

1. 한인회 회장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
2. 회장선거에 입후보를 원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내용 공지 후 14일 이내에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와 함께 한인회 정관에서 정한 요식서류를 갖추어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문위원회는 7일 내에 자격 실질심사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투표 참가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하되, 만약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대체안을 결정하고, 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고 공표된 내용대로 진행한다.
4.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회장직 수행과 한인회 조직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당선 공표를 선언한다.
5. 회장 입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선거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임회장이 6개월 연임하며, 연임기간 중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회장의 임기 만료 60일 이전에 한인회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 일시 및 장소를 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거

제 26조 정의

1. 회장은 총회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회장에 입후보를 원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단일 후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5. 복수 후보 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6. 후보가 없을 시, 전임회장이 6개월간 연임하여 연임 기간중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잔여 임기 동안만 임무를 수행한다.
7.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8. 이사회는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6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한다.

제 27조 선거권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한인회장 선거권은 정회원으로 3개월 전 재외국민 등록 또는 한인회원 등록을 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당해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3. 한인회장 선거에서 법인회원 또는 가족회원의 선거권은 대표자 1인에 한한다.

제 28조 피선거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
2.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한국 출생자로서 태국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허가를 득한 자
4. 총 5회 이상의 한인회비를 납부하였거나 직전 3년동안 계속하여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개인, 법인, 단체, 찬조 모두 다 포함됨)
5. 국가 공무원법 33조 (별첨참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태국 거주기간 중 태국법에 따른 범법 사실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

제 29조 공탁금

1.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회원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공탁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물가 상승,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5조 선거권 (選舉權)

다음 각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1. 한인회의 모든 정회원은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2. 한인회장 선거에서 법인회원 또는 가족회원의 선거권은 대표자 1인에 한한다.
3.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의 조건을 충족하고 한국여권을 소유했었거나 소유한 자.

제 26조 피선거권 (被選舉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50 세 이상인 자.
2.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총 5회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하였거나 직전 3년동안 계속해서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찬조 및 협찬을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지선 신고를 받은 자, 또는 태국 거주기간 중 범법사실로 태국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 27조 입후보 및 공탁금 (立候補 및 供託金)

1. 회장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공지 후 14일 이내에 입후보 관련 서류를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공탁금 전액을 한인회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입후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심의한 뒤 그 결과를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3. 자문위원회는 현재의 물가 상승비율과 시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공탁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하향조정은 할 수 없다.
4. 회장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공탁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입후보자의 당락과는 관계없이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3.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한인회로 귀속된다.

제 30조 공약금

1. 한인회장 선거에서 금전에 대한 공약을 하는 후보는 당선 확정 후 7일 이내 공약금을 한인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낙선 시에는 해당 공약금을 반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당선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1조 선거비용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한다.

제 32조 선거관리 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비납부에 관계없이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복수로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선거일 확정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고, 당해 선거 후 차기선거 시에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입후보자는 이를 동의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8조 입후보자 공약금 (立候補者 公約金)

1. 선거공약에서 당선조건으로 한인회를 위한 일정액의 후원금을 언급 또는 약속한 후보자는 그 금액을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한인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비당선인의 예치금은 선거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며 당선인의 예치금은 한인회에 귀속되어 약속된 공약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29조 선거비용 (選舉費用)

1. 이사회는 선거관련 비용을 책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30조 선거관리위원회 (選舉管理委員會)

한인회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5명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확정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 및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를 마친 후 차기 선거 시에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 위원회를 구성한다.
5. 회장 입후보 등록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자필이력서 1부
 - 2) 여권사본 1부 및 태국 체류허가비자 사본 1부
 - 3) 범죄경력증명 1부

제 7 장 재무 (財務)

제 31조 회계연도 및 규정 (會計年度 및 規定)

1. 한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단, 본 회칙 제8조에 명시한 정기총회의 일정에 따라 1개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주변환경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으로 집회, 모임 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때로 한정한다.
2. 한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3. 한인회는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해 목적사업에 사용한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매월 이사회에서 그 상황을 공개한다.

제 32조 회계보고 (會計報告)

1. 한인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2.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종합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단, 감사 중 잘못 집행된 사안이나 재정적 비행이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진술과 함께 정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먼저 자문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 33조 출납 (出納)

1. 한인회의 모든 금전출납은 재무담당자가 하도록 하며, 재무담당자는 한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 한다.
2. 재무의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무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해당 기구의 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 7장 재 정

제 33조 회계연도

한인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2 개월)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제 8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총회의 일정에 따라 1 개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34조 정기회비, 찬조금 등

1. 한인회는 업무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정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회비 금액은 회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한인회는 회비 이외에 찬조금, 정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3. 한인회는 전항의 규정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5조 재정관리

1.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와 수입, 지출에 따른 거래를 명료히 기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현금수지 외의 자산관리를 위한 보조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36조 회계보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제 27조에 규정한 회계연도분의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회계기준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이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재무제표는 감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4조 사업 (事業)

한인회는 본 정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올바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2.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4. 한국 전통문화의 소개 및 교류
5. 태국 국민들과의 우호 증진
6.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7. 기타 태국 내·외에서 한인사회 대표 단체로서의 역할

제 8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제 35조 정의 (定意)

1. 한인사회 또는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2. 상벌에 대한 심사는 한인회 집행부인 이사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한인사회 또는 한인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회원은 한인회에 귀속된 그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으며, 한인회장의 입후보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 해임 (解任)

1.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및 한인회 조직 기구에 등재된 조직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여된 현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3)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한인사회 내에 여론화가 야기되어 해당조직의 결의가 있을 때.

제 9 장 상 별

제 37조 포 상

1. 본회 및 회원에 대하여 지대한 공을 세운 자를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38조 처 벌

1.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과오를 범한 회원은 고발, 경고, 훈계, 제명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2. 처벌은 회장, 이사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 해임절차

1) 이사회는 탄원서나 기타 방법으로 해임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자체조사 와 심의를 하여 이사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회에 해임동의안을 제출한다.

2) 자문위원회는 사안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련자료 요청과 함께 탄원대상이 된 당사자의 진술 등 개별심의를 마친 후 자문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 로 해임사항을 결정한다.

제 9장 인수인계 (引受 引繼)

제 37조 구성 및 업무 (構成 및 業務)

1. 현 회장과 신임회장은 한인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3-5명씩의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 며 인수위원회는 사무국 유급 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계하는 현 회장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만료 이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3.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사 람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인수인계 업무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8조 인계서류 (引繼書類)

1.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 1) 정관 및 제반 규정.
-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 3) 한인회 업무에 관한 서류.
- 4) 한인회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 5) 은행구좌 목록 및 수표책.

- 6) 세금 및 관련서류 일체.
- 7) 한인회관에 관한 서류 일체.
- 8) 기타 한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 9) 한인회장 직인 및 기타 인수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 10장 부칙 (附則)

제 39조 정관개정 (會則改正)

본 정관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를 마치고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40조 관례 (慣例)

본 정관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1조 발효 (發效)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정관 연혁 : 1968년 사단법인 재 태국 한인회로 등록 완료.

2002년 7월 4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

2008년 1월 23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

2009년 5월 20일 임시 총회에서 개정.

2016년 10월 1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끝-

부 칙

본 정관은 한인회가 법인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68년)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7월 4일 개정)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23일 개정)

부 칙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9년 5월 20일 개정)

* 별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심의 연월일 : 2016년 10 월 13일

회칙개정 심의위원회

- 1) 위원장: 김형곤
- 2) 위 원: 이정우
- 3) 위 원: 황경선
- 4) 위 원: 이형배
- 5) 위 원: 김병호
- 6) 위 원: 이인규
- 7) 간 사 : 서상운
- 8) 입 회 (現 한인회장) : 채언기

